성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구체화 하고 지방세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결과와

○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성주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운영상 미비점 보완 : 2건

1)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구체화 (안 제3조)

- 당초 저소득계층 장애인의 이동상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정규모 이하의 자동차 1대에 한정하여 감면을 신설하였으나,
- 구 행정자치부 지방세 심사결정으로 2대의 자동차가 감면받는 사례가 발생함.

※ 지방세 심사결정 : 기존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만 감면받아 오다가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·등록세 면제 대상으로 인정

- 당초 취지대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장애인용 자동차로 인정하여 취득세·등록세·자동차세가 감면 받도록 단서조항 신설

※ 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

2) 동일 전용면적 임대주택에 대해 동일수준으로 감면(안 제14조)

- 특별·광역시 지역의 전용면적 60㎡이하 임대주택은 도시계획세가 면제되나, 도 지역은 40㎡이하인 경우에만 도시계획세 면제
- 도 지역 경우에도 특별·광역시 지역과 동일하게 전용면적 60㎡ 이하의 임대주택까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여 지역간 형평성 제고

나. 자치단체 의견수렴 결과 반영 : 3건

1) 주택에 대한 용어 정비(안 제22조)

- 「지방세법」 제180조 등에서 건축물과 토지 외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일괄하여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
-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,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면조례상의 **'주거용 부동산'을 '주택'으로 일괄 정비**

2) 임대주택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(안 제14조)

- 「임대주택법」(전부개정 법률 제8966호, 2008.3.21) 및 동법 시행령(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0849호, 2008.6.20)의 개정으로 감면 대상과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 등으로 추징할 경우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조문 수정

3) 오지개발사업 관계 법령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13조)

- 「오지개발촉진법」이 폐지(폐지 법률 제9008호 2008.3.28) 됨에 따라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은 삭제

다. 기타 단순 조문 정비 : 4건

1)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조문 정비(안 제26조)

- 법률명칭이 변경(「화물유통촉진법」->「물류정책기본법」)되고, 영업용 창고용에 한해 감면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
- 근거법령 및 감면 대상(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)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감면 대상 명확화

2)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조문 정비(안 제33조)

-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32조 제4항 제14호 규정(재산세 분리과세)에 따라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 감면규정 정비

3)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련 근거 법률명칭에 따른 조문정비(안 제13조)

-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련 구체적인 근거 법률이 있어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을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으로 인용법률 명칭 변경

4)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정비
(안 제9조, 제13조, 제15조, 제15조의2, 제19조, 제31조)

- '정부조직법'의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및 기능 조정, 조직 통·폐합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

5. 검토의견

□ 본 개정 조례안은

○ 행정안전부(지방세 정책과)에서는 그 동안 지방세 감면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계부처, 지방세제 개선포럼, 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「**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**」을 확정하여 2008년 9월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습니다.

○ 따라서 우리군 에서도 이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

- 제도 운영상 미비한 점 2건, 자치단체 의견 수렴 결과 반영 3건, 기타 단순 조문 정비 4건 등 총 9건을 개정한 것입니다.

□ 결론적으로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「**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**」을 근거로 하여 개정하였고

○ 신·구 조문 대비표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
「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」의 제반규정에 적합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